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18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이수진・박홍배・이기헌

김동아 · 최기상 · 민병덕

백승아 · 김현정 · 임미애

정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근로복지공단에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 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3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15명"을 "1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인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제16조(임원) ①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u>15명</u> 이내의 이사와 감	<u>16명</u>
사 1명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비상임이사(제4항에 따라	3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	
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_,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하되, 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
	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다)

	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의 동의를 받은 사람 1인
④ · 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